

#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여·변경·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4. 23.

## 양 주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89번길 44 외 5

토지소재지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고시일 (효력발생일)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(별지참조)	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(031-8082-6372)로 문의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([www.yangju.go.kr](http://www.yangju.go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4. 4. 23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